



# 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「의료기기법」 일부개정법률(법률 제18446호) 개정·공포 알림

1. 「의료기기법」 (법률 제18446호, '21. 8. 17. 공포)와 관련한 문서입니다.
2. 회수·폐기 대상 의료기기 확대 등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의료기기법」 일부개정법률(법률 제18446호)이 2021.8.17.자로 불임과 같이 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3. 아울러, 개정된 법률안은 전자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불임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(법률 제18446호) 1부. 끝.

## 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수신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, (재)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,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,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, 사단법인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, 사단법인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의공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사단법인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장, 사단법인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장, 사단법인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장, 사단법인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, (재)한국의료기기평가원이사장, (재)한국의료기기기술원이사장

주무관 서아림 사무관 정재용 의료기기정책과전결 2021.8.18.  
과장 이남희

협조자

시행 의료기기정책과-6921 (2021. 8. 19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처 / [www.mfds.go.kr](http://www.mfds.go.kr)

전화번호 043-719-3761 팩스번호 043-719-3750 / [woodsseo@korea.kr](mailto:woodsseo@korea.kr) / 대국민 공개